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수급자 감액 제도 폐지〉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1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13.
-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 조제3항 삭제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부부인 경우, 기초급여액의 각각 20%를 감액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 및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¹⁾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부 감액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①·② (생략)	제6조(기초급여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삭제>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생략)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제6조제4항 ----- -----.

1)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한 특례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검토의견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장애인연금 급여액(2024년)^{주1)} >

(단위: 원)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424,810원 ^{주2)}	424,81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34,810원		- ^{주3)}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000원	414,810원		80,000원 ^{주4)}	80,000원
차상위 초과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주1)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주2)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주3)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80,000원 지급

주4)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는 특례가 적용되어 150,000원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현행법 제6조제3항에서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하여 주거비, 관리비 등의 공동부담으로 인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에 따른 수급자 간 기초급여액 실질가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부터 부부 동시 수급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가구 단위로는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을 받도록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단독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34,810원인 반면, 부부감액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은 부부 합산 535,680원(단독가구의 1.6배 수준, 1인 기준 267,840원)임.³⁾

□ 2024년 8월 기준, 부부감액 규정을 적용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352,605명) 중 1.73%(6,093명)로 지난 5년간 이 비율은 전체 수급자 대비 2% 초반대에서 1% 후반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1인가구 소비지출은 1,649,000원, 2인가구는 2,496,000원으로 2인가구의 소비지출은 1인가구의 약 1.5배 수준임.

3)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장애인연금 부부 수급자 및 비율 >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전체 수급자	375,759	371,413	362,127	355,094	352,605
부부 2인 수급자	8,194	7,676	7,029	6,408	6,093
부부감액자 비율	2.18%	2.07%	1.94%	1.80%	1.73%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연금 실수령액 증가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21억 3,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2025년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 아울러,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일만으로는 개정안의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⁴⁾

4)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적용례를 둘 수 있음.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부부감액 제도는 공동생활에 따른 부부 가구의 생활비(주거비, 공과금 등) 절감 요인을 반영하여 부부 동시 수급자와 단독 수급자 간 급여액 실질 가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폐지는 신중검토가 필요함.
- 한편,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타 사회보장급여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가구원 수,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급여액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나. 기획재정부

- 장애인 부부의 소비지출 패턴, 유사 제도와 정합성 고려시 부부에 대한 기초급여액 감액은 현행 유지할 필요

-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단독가구 대비 $\Delta 24.3\%^*$ 적은 점을 고려

* 월평균 소비지출('24.1/4분기): (1인 가구) 1,649천원 (2인 가구) 2,496천원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지수*와 유사한 취지

*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을 고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차등화(4인 가구를 1로 가정)
→ 1인가구: 0.4, 2인가구: 0.65($\Delta 18.8\%$)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연혁

-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개편('10.7.1.)
 - 「장애인연금법」 제정('10.7.), 경증장애수당은 유지
 -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상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10.7.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14.7.1.)
 - 「장애인연금법」 개정('14.5.)
 - ※ (기초급여액) 99,100원 → 20만 원, (대상자) 소득 하위 63% → 소득 하위 70%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법」 개정('18.3)
 - ※ (기초급여액) 20만 원 → 25만 원('18.9.)
 - 소득수준별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③ 전체 수급자 ('2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22.1~)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수급자 : 35만 5,094명(수급률 70%, '23.12월 기준)

☐ 예산 : 지자체 보조 국비 892,627백만원(서울 50%, 지방 70% 보조)

자료: 보건복지부